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 전면개정·시행(2015.7.1.)으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라. 조례 제24조에 따른 성평등대상 수상대상자 선정,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다. 조례 제27조에 따른 성평등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31-8008-2531), 팩스(031-8008-2519), 이메일(wounja@gg.go.kr)

나.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평등위원 등)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경기도의회의 양성평등관련 업무 소관 위원회 위원

나. 양성평등관련 학자 및 전문가

다. 양성평등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현장 활동가 및 도민

라.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인증기업 관련자

마.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한다.

1. 성주류화분과위원회

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

가. 조례 제26조에 따른 경기도성평등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나.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 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라.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여성일자리분과위원회

- 가.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 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직업훈련교육과정 선정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여성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여성안전분과위원회

- 가. 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의 마련에 관한 사항
- 나.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 ②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4조(성평등대상)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대상의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군수 및 도 단위 기관·단체의 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자로 한다.

- 1.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사람으로 추천일 현재 도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와 양성평등을 촉진한 기초자치단체
- ② 성평등대상의 수상자는 경기도성평등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중 심사선정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성평등대상을 수상한 자는 다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덕망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의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위촉된 해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해촉된다.
- ④ 수상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1. 「민법」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 2.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별표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 2. 기관 및 단체의 현황 및 정관
- 3.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일 이전 1년 간 활동 및 사업 실적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신·구조문 대비표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양성평등정책 관련 활동 및 사업 추진실적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실·과장 직위·성명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팀장 직위·성명	양성평등정책TF팀장 엄원자
	담당자 성명·전화	행정6(일반입기제) 안선덕(8008-2517)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성평등정책조정회의 등) ①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른 성평등정책조정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당연직위원 : 매 회의를 마다 실·국·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p> <p>2. 위촉직위원 : 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 1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성평등정책 전문가 3인</p> <p>② 조례 제26조제4항 따른 성평등정책실무조정회의의 위원은 매 회의를 마다 조례 제23조에 의한 성평등정책실무책임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성평등위원회 등)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경기도의회의 양성평등 관련 업무 소관 위원회 위원</p> <p>2. 양성평등관련 학자 및 전문가</p> <p>3. 양성평등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현장 활동가 및 도민</p> <p>4.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인증기업 관련자</p> <p>5.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p> <p>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한다.</p> <p>1. 성주류화분과위원회</p> <p>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나.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다.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p> <p>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p> <p>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p> <p>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2.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
- 가. 조례 제26조에 따른 경기도성평등기금 (이하 "기금" 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나.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 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라.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여성일자리분과위원회
- 가.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 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직업훈련교육과정 선정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여성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여성안전분과위원회
- 가. 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 나.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 ②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4조(성평등대상)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신 설>

제3조(지원대상)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민법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법에 의거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따른 성평등대상의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군수 및 도 단위 기관·단체의 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자로 한다.

1.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사람으로 추천일 현재 도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와 양성평등을 촉진한 기초자치단체
- ② 성평등대상의 수상자는 경기도성평등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중 심사·선정한다.
- ③ 이 조례에 따라 성평등대상을 수상하는 자는 다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덕망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의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위촉된 해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해촉된다.
- ④ 수상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1. 「민법」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신 설>

<p>서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에 의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하 “여성단체“라 한다)</p> <p>2.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소</p> <p>3. 그 밖에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p>	<p>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p> <p>2.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p> <p>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p> <p>②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별표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p> <p>2. 기관 및 단체의 현황 및 정관</p> <p>3.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일 이전 1년 간 활동 및 사업 실적</p> <p>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p> <p>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p> <p>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p> <p>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p> <p>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p> <p>5. 양성평등정책 관련 활동 및 사업 추진 실적</p>
<p>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p> <p>2. 단체의 현황 및 정관 등</p> <p>3. 신청인의 최근 1년 간 활동실적</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경기도여성발전기금분과위원회 (이하 “분과위원회“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p>	<p><삭 제></p>

<p>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p> <p>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p> <p>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p> <p>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p> <p>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p> <p>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신청인과 지원 사업추진 약정을 체결한 후 보조금을 해당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기금을 보조받은 신청인이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7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보조받은 신청인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신청인은 보조금 중 집행 잔액을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8조(기금관리 심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는 심의회는 전년도 기금사용의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9월 이후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p>	<p><삭 제></p>

심의한다.
제9조(장부의 보관)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거나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신 설>

제10조(선발기준) 조례 제44조에 따른 경기도 여성상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성평등에 노력하여 여성의 인권보호,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 권익증진에 공헌한 여성
 2. 개인 또는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불우이웃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성
 3.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이를 가르치고, 발표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여성
 4. 신지식, 과학·기술, 기업경영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 기업경영 또는 지역경제를 위해 공헌한 여성
 5. 그 밖에 각계각층 및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여성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경기도여성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

<삭 제>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입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제5호 서식)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4. 그 밖의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포상추천이 제한된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12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나 자료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대리수상) 도지사는 수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경기도여성상을 대리하여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